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 위임, 기증품 취득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 담당관·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받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시에는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물품관리조례”를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으로 하여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 과, 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 면. 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의”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청. 소의 장”를 “물품관리관”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청. 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본문중 “조제”를 각각 “작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물품출납사무의”를 “물품관리사무의”로 하고, 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1 ◦품종구분 기준 (1) 비품의 ②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생략)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 과, 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함.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생략) <신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기 위함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증물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신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 제>	◦영 제61조 에서 정수물 품임을 규정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 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 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 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 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 하여는 <u>영 제96조제2항</u> 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영 제27조제1항</u> ----- -----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 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 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보관책임) <u>재고품은 물품출 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 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 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 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 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u>	◦물 품 운 용 관 추가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u>시장 또는 청.소의 장</u> <u>의</u>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 킬 수 있다. ② <u>물품출납원</u> 은 물품을 일시 보관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 다.	제22조(일시보관) ① <u>물품출납원 또 는 물품운용관</u> ----- ----- <u>그 소속 기관</u> <u>의 장의</u> ----- -----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해</u> ----- ----- -----	◦물 품 운 용 관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u>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u>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 ④ <u>청·소의 장이</u>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u>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물품관리관에게</u> ----- ④ <u>물품관리관은</u> ----- ----- ----- -----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
제26조(장부의 <u>조제</u>)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u>조제</u>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장부의 <u>작성</u>) ① ----- ----- <u>작성</u> ----- ----- -----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용어정리 ◦행정사무전산화 추진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u> ----- ----- -----	◦물품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u>검사</u>) ① <u>영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u> 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u>검사</u>) ① <u>영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u> ----- ----- ----- ----- ② (현행과 같음)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0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u>시장 또는 청소의 장</u> 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 ----- ----- ----- ----- 물품관리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제3항에서 이미 규정
② (생략)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u>시장 또는 청소의 장</u> 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 ----- 물품관리관이 ----- ----- -----	

현행	개정안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생략) (2) (생략)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생략) ② <u>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u> ③ (생략) (2) 소모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참 고 사 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시행령

제2조(모집허가권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13조(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가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424(2006.1.26)